

신구조문대비표
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

대외무역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913호, 2023. 12. 12., 타법개정]	대외무역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995호, 2023. 12. 19., 일부개정]
<p>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외화획득용 원료·기재”란 외화획득용 원료, 외화획득용 시설기재, 외화획득용 제품,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.</p> <p>6. “외화획득용 원료”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(이하 “물품등”이라 한다)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·부자재·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.</p> <p>7. “외화획득용 시설기재”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·기계·장치·부품 및 구성품[물품등의 하자(瑕疵)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·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]을 말한다.</p> <p>8. “외화획득용 제품”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.</p> <p>9. “외화획득용 용역”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.</p> <p>10. “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”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외화획득용 원료·기재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외화획득용 원료: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,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(이하 “물품등”이라 한다)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·부자재·부품 및 구성품</p> <p>나. 외화획득용 시설기재():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·기계·장치·부품 및 구성품[물품등의 하자(瑕疵)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·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]</p> <p>다. 외화획득용 제품: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</p> <p>라. 외화획득용 용역: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</p> <p>마.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: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<p>11.12. (생략)</p> <p>제3조(용역의 범위) 「대외무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</p> <p>가. 경영 상담업</p> <p>나. 법무 관련 서비스업</p> <p>다.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</p> <p>라. 엔지니어링 서비스업</p> <p>마. 디자인</p> <p>바.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</p> <p>사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</p> <p>아. 운수업</p> <p>자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(이하 “관광사업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업종</p> <p>차.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</p> <p>2.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·저작권·저작인접권·프로그램저작권·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(), 전용실시권(專用實施權)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(通常實施權)의 허락</p> <p><신설></p>	<p>11.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용역의 범위) 「대외무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.</p> <p>1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용역(출판업과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)</p> <p>2.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</p> <p>3.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·저작권·저작인접권·프로그램저작권·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(讓渡), 전용실시권(專用實施權)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(通常實施權)의 허락</p>
<p>제31조(구매확인서의 신청·발급 등)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2. (생략)</p> <p>3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·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1조(구매확인서의 신청·발급 등)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외화획득용 원료·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,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(이하 “한국선주협회”라 하고,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), 「관광진흥법」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</p>	<p>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,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(이하 “한국해운협회”라 하고,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), 「관광진흥법」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</p>

<p>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), 업종별 관광협회(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)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(이하 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”라 하고,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)에 위탁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⑥ ~ ⑫ (생략)</p>	<p>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), 업종별 관광협회(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)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(이하 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”라 하고,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)에 위탁한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~ ⑫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3조(공무원 의제) 법 제58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한국선주협회</p> <p>4. ~ 9. (생략)</p>	<p>제93조(공무원 의제) 법 제58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한국해운협회</p> <p>4. ~ 9. (현행과 같음)</p>